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임.

한국은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왔음. 정부는 2006년 전자적정보공개청구시스템 구축, 2013년 정보원문공개 시행 등으로 정보공개편의성 강화와 적극적 정보공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로인해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서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이 대폭 확대됨. 제도가 대중화 된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에, 사전공개 확대 및 심의회 운영 내실화 등 행정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 됨.

이에 ▲정보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재난 참사 유족과 같이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한 경우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도 정보접근권 보장 ▲각 공공기관의 사전 공개 정보 의무 구체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확대 및 대면회의 원칙 신설 ▲심의회 회의록 및 정보공개 처리대장 공개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1.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현행법에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는 국민과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제한 됨. 하지만 알권리는 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적과 거주지 등으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됨.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이 소방서를 상대로 구급일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외국인이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기도 함. 프랑스의 경우 ‘모든 사람’(toute personne), 미국과 영국의 경우 ‘누구나’(any person), 일본의 경우 ‘누구든지’ 등으로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자격을 두지 않은 사례가 많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이해관계자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구권자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2. 사전정보공개 항목 구체화 및 운영 내실화

사전정보공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기관의 주요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방향이 수동적 미온적 방향에서 능동적 실질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임.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이 사전공표정보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통계나 안내 등으로 종수만을 부풀리거나, 주기적인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 함. 이에 모든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보,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들을 보다 내실 있게 공개할 수 있도록 사전공개 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행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정보는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함

### 3. 정보 접수, 보유 기관의 자율적 판단 보장

공공기관이 접수하거나 수집한 기록의 경우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여, 보유 기관의 자율성을 높임. 이를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등 고유 업무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거나 수집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

### 4. 정보공개심의회 내실화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역할에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각 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이 법령의 취지 및 판례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보장함  
또한 무분별하게 서면심의가 남발되어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대면심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가 가능한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제한함. 또한 심의회의

회의록 및 의결 결과는 각 기관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과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5. 정보공개처리대장 사전공개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사전정보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모든 기관이 공개하도록 하여, 청구의 내용과 처리 적절성, 공개 여부 등을 청구인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향후 이를 기반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 답변을 미리 확인하는 등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5.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 공개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평가 및 조사 등 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임. 정보공개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 질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내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이해관계자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p> <p>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p>	<p>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p> <p>1.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p>

<p>· 상하수도 · 전기 ·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p>	<p>가. 재난·응급상황 정보 나. 시설물 안전정보 다. 환경안전정보 라. 보건안전 · 복지 정보</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p>	<p>2.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p>
<p>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 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다)</p>	<p>가. 개발사업 관련 정보 나. 부동산 정책 정보</p>
<p>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 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 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 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 한 정보를 포함한다)</p>	<p>3. 교육 · 의료 · 교통 · 조세 · 건축 · 상하수도 · 전기 ·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정보</p>
<p>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p> <p>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 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p> <p>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p> <p>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p>	<p>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p> <p>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 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다)</p> <p>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 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 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 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p>

<p>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p>	<p>한 정보를 포함한다)</p>
<p>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p>	<p>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p>
<p>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p>	<p>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5.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p>
	<p>6.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p>
	<p>7.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 결과 및 회의록</p>
	<p>8.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명칭, 관리 항목명 및 생성일자 등 정보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p>
	<p>9.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p>

<p>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련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p> <p>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에 게재되는 정보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각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한 공표주기에 맞추어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할 경우 그 사유와 공개 예정일을 정보통신망에 공지하여야 한다.</p> <p>④ (현행 4조 3항과 동일)</p>
---	--

<p>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u>결정할 수 있다.</u></p>
<p>제11조(정보공개심의회)</p> <p>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li> <li>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li> </ol>	<p>제11조(정보공개심의회)</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동일)</li> </ol>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  
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  
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  
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  
을 할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3. 법 제9조 3항 및 4항에 따른  
비공개세부기준 수립 및 점검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에 관한 사항

③ ~ ④ (현행과 동일)

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 또는 화상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2. 서면심의 개최에 대해 위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절차·위원별 의견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이를 차기 출석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록 및 의결결과는 각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⑧ (현행 11조 5항과 동일)

<p>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u>하며</u>, 이를 <u>정보통신망을 통해</u> 공개하여야 한다.</p>
<p>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lt;신 설&gt;</u></p>	<p>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의결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은 위원회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p>